

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. 10. 30 선고 2023가단4017 판결 [건물명도 등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 유한회사

변 론 종 결 2024. 10. 16.

판 결 선 고 2024. 10. 30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

가.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99.28㎡를 인도하고,

나. 10,250,000원과 2024. 10. 1.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,050,000원의 비율로
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다만, 원고는 당초 2023. 12. 1.부터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월 20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청구하였으나,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서, 피고가 그 중 2023. 12.분부터 2024. 9.분까지의 금원을 입금하였음을 이유로 2024. 10. 1.부터 위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감축하였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김민정

별지